

대한 양계협회

소식

'91년 제2차 이사회 개최 자조금사업 추진키로



본회는 91년 제2차 이사회를 지난 24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사회에서는 '91년 제1차 이사회 회의록 요약보고와 협회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이어 부의안건 심의가 있었다. 규정 일부 개정(안), 한국양계박람회 개최계획 및 예산(안), 자조금제도 시행에 관한 건이 부의되어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한국양계박람회는 UR협상에 따른 대응책을 모

색하고, 양계산업 미래상 제시, 양계산물 우수성 홍보 등을 위해 오는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올림픽공원에서 개최키로 하였다.

행사내용은 가금류, 가금류 모형, 가금류 알, 병아리 부화과정, 종계, 사육시설 및 기자재, 양계산물 가공식품, 사료 및 약품을 전시하고, 초중고생 대상 양계산물 우수성 표어공모, 포스터 공모, 닭요리솜씨대회, 다산계심사 경진대회, 우수양계인 선발, 계란먹기대회, 농악경연대회, 국제경쟁력제고 심포지엄, 채란인·육계인대회, 투계시범, 시민닭싸움|챔피온 선발, 병아리사육·관찰일기대회 등의 각종 행사를 개최키로 하였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자조금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시행한다는 원칙만을 승인하였으며 종계, 채란, 육계 부문으로 각 특성에 맞게 시행방법은 회원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친뒤 추진계획을 확정키로 하였다.

양계업 자조금 사업 추진 계획(안)

1. 법적 근거(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가. 법

제13조(자조금의 적립지원)

(1) 농림수산부장관은 특정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이 생산자단체를 조직하여 당해 농수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대상이 되는 농수산물과 보조금의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시행령

제23조(자금조의 조성 방법 등)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은 농어민이 생산자단체를 조직하여 자율적으로 당해 생산자단체에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성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는 자조금의 조성방법과 관리, 운용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수산물의 범위)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농수산물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돼지

2. 닭

3. 우유

4. 기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축산물

제25조(보조금의 지급)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는 생산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자조금의 사용목적

2. 자조금의 조성액

3. 자조금의 사용액 및 사용내역

(2) 농림수산부장관이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육조절사업

2. 수매비축 및 판매사업

3.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기준은 제24조의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이 조직한 생산자단체가 자조금으로 매년 조성한 금액의 100분의 50범위내로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축산물인 경우에는 축산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진흥기금에서, 농산물인 경우에는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정부가 다음 연도의 예산범위 안에서 당해 기금에 출연하여 보조한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시행규칙

제26조(자조금의 조성기준)

영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민이 자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는 생산자단체(이하 "자조금조성단체"라 한다)에 납입하는 금액은 자조금 조성의 대상이 되는 농축산물생산가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생산자단체가 정한다.

제27조(자조금관리규정 기재사항)

영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금조성 단체가 정하는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사업

3. 명칭

4. 사무소의 소재지

5. 회원의 자격

6. 회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탈퇴, 제명시의 납입금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

8. 자조금의 납입방법, 조성기준의 산정방법

9. 자조금의 적립하여야 할 금액과 수납장소

10. 잉여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1. 총회 기타 의결기관 및 임원의 정수, 선출 및 그 해임에 관한 사항

12.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

2. 자조금 사업의 법적인 문제점

○ 자조금 납부, 정수의 강제규정이 없으므로 무임편승자 배제할 수 없음.

○ 자율적 참여, 자율적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양계인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움.

○ 자조금의 납입금액이 자조금을 시행하는 단체가 생산가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인별 통계자료가 없는 현시점에서는 일정한 기준치를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임.

3. 향후 자조금사업 추진 계획(안)

가. 자조금사업 시행여부 결정 : 91.7.24 개최 이사회

나. 추진방법(이사회에서 시행키로 확정시)

(1) 양계자조금 규정 제정

- (가) 기간 : 91. 8월 말한
 (나) 규정안 이사회 동의(차기 이사회 개최시)
 (다) 참여자 동의서 정취 : 91. 10월 말한
 (지부, 분회장이 개인별로 정취)
 (라) 농림수산부 승인 : 91. 11월 중
 (마) 자조금사업, 계획 확정 : 92년 정기총회시
 (바) 시행 : 92. 3. 1부터
- (2) 양계 자조금 참여 대상 : 전 양계인
 (3) 양계 자조금 규정에 표기할 사항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시행 규칙 제27조 규정
 에 의한 사항
 (4) 양계자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
 ○ 사육조절사업
 ○ 수매비축 및 판매사업
 ○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 생산성 향상 및 상품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 소비자 및 생산자 계도를 위한 교육사업
 ○ 양계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
 한 사업
 ○ 기타 농림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업
- (5) 자조금 납부 금액의 결정 및 납부방법
 (가) 생산가액의 1,000분지 2로 함
 예 : ○ 생산가액
 10,000수 규모 육계농가는 10,000수 × 3회 전
 × 1.5kg × 생산비 925원 = 41,625,000원
 ○ 자조금 납부 금액
 41,625,000원 × 2/1,000 = 83,250원 (연간 납부
 액)
 (나) 매 회계년도별로 전년도 생산가액을 개인별
 로 추정하여 자조금 납부금액을 통지(납부고지서
 발급)하고 자진 납부도록 조치
 (다) 일단 납부된 금액은 반환치 않음.
 * 90년 기준 생산가액의 1,000분지 2로 할 시, 자
 조금 조성 예상액
 ○ 산란계
 생산량 7,101,775,000개 × 생산비 52원 × 2/1,000
 = 738,584,600원

- 육계
 생산량 321,666,000수 × 생산비 925원 × 2/1,000
 = 595,082,100원
 ○ 종계부화
 - 산란계 25,000,000수 × 생산비 400원 × 2/1,000
 = 20,000,000원
 - 육계 321,666,000수 × 생산비 200원 × 2/1,000
 = 128,666,400원
 소계 : 148,666,400원
 총계 : 1,482,333,100원
 (6) 운영방법
 (가) 사업주체 : (사)대한양계협회
 (나) 자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다) 운영위원회 설치(업종별로 구성) 운영
 (라) 업종별 납부실적 비율대로 집행
 (마) 수매비축사업 등은 양계조합 등에 자금을
 배정하여 집행토록 조치하고 참여자에 한해서 수
 혜조치
 (7) 기타
 (가) 전기 각호의 사항은 자조금사업을 시행키로
 결정되면 자조금 규정에 표기되어야 할 사항임.
 (나) 세부행정 사항은 별도 규정에 명시할 것임.

닭고기 소비홍보 가두캠페인 실시 통닭 염가판매 큰 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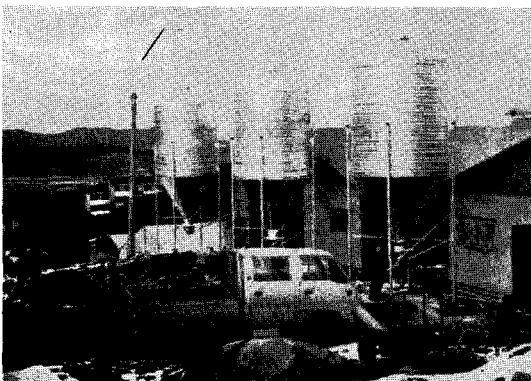
본회는 극심한 육계불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지난 5일 강남고속터미널 광장과 11일 잠실 주공아파

트단지에서 닭고기 소비홍보 가두캠페인을 실시하였다.

1차로 실시된 캠페인에서는 육계생산자, 협회 직원 등 120여명이 참가, 닭고기 홍보전단을 배부하며 닭고기 소비를 호소하였다. 또 (주)서울인터의 협조로 닭고기 1,000마리를 염가판매(마리당 1,200원)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잠실주공아파트단지에서 실시한 2차 캠페인에서도 캠페인전단, 닭고기 우수성, 닭고기요리책자 등을 배부하고, 닭고기 1,700마리를 염가로 판매하였다.

자동화시설 축사 방화벽 불필요 건설부 유권 해석



본회가 지난 89년 9월 건설부와 농림수산부에 건의한 1,000m² 이상 계사 방화벽 설치에 대한 건에 대해 건설부는 축사시설 자동화 등으로 용도상 불가피한 경우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회신을 해왔다.

건축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m² 이상일 경우에 방화구획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양계자동화시설을 위해서는 축사규모를 2,000m² 이상으로 확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국제경쟁력 배양을 위한 시설자동화를 할 수 없어 운동시설, 집회시설, 공장 등과 같이 방화벽 설치대상 건물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한 건설부의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다.

건설부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은 대형건축물을 일정 규모로 방화구획하여 화재발생시 연소를 막고 인명과 재화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동 제2항 제1호의 규정에서 관람집회시설, 운동장, 공장, 통신촬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은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 동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바, 귀건의 축사의 경우 축사시설 자동화 설치 등으로 그 용도상 불가피한다면 동 제2항 제1호 규정의 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 보아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된다.

노계처리 전문도계장 설치 건의 양계산업 안정적 발전 위해

본회는 지난 13일 농림수산부에 노계처리 전문도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양계산업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자율생산조절이 선결요건이기 때문에 불황시 생산농가가 노계를 도태하려 해도 도계장 시설(노계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도계장)이 부족하여 적기에 도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노계처리 지역에 따른 생산량이 가중되어 양계업 불황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양계산업 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노계처리 전문도계장 설치에 관한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다.

배경 및 필요성

- 연간 노계도계 예상수수 : 약 30,848천수
 - 산란계 40,377 천수×70% = 28,264 천수
 - 종 계 3,691 천수×70% = 2,584 천수
- 연간 노계육 생산예상량 : 23,444t(정육)

-노계 44,068 천수(산란계+종계)×2kg×70%×정육율 38%

○ 현존 도계장(전국 74개소) 중 3~4개소(이도 노계처리 전문도계장은 아니며 자체 도계물량의 40~60% 정도만 보조수단으로 노계처리하는 곳임)를 제외하고는 육계전문 도계장임.

○ 정상적인 노계 도태를 위하여는 1일 8~10만 수 정도를 도계처리 해야 하나 2~4만수 정도만 정상처리되고 있으며 나머지 물량은 자연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비상수단으로 일반 육계 전용도계장에서 육계도계작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처리는 하고 있으나 노계처리는 육계와 작업과정(처리시설 자체가 달라야 함)이 다른 관계로 작업상의 능률이 떨어지고 상품성이 저하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

○ 노계처리(도계)는 일반 육계와 달리 폐수발생량이 많고 도계후 발골작업까지 하여 정육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뼈를 포함한 부산물 및 폐수처리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기존의 육계전문 도계장에서는 취급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리하게라도 처리가 가능한 도계장에서도 노계도계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 육가공산업의 발전으로 노계육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전기 각호와 같은 상황으로 정상적인 노계처리가 되고 있지 않아 적기에 소요물량의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입 칠면조육으로 대체 사용함에 따라 국내 노계육 시장은 물론 육계시장이 붕괴될 우려가 큽니다.

○ 노계육 수요는 행락철인 봄과 가을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 시기는 계란소비가 많은 시기이므로 생산자들이 노계의 도태를 기피하고 있으므로 비수기에 노계를 다량 도태하여 비축 사용하지 않은 한 육가공 원료육의 안정적인 공급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노계 전문 도계장에 발골, 비축시설을 병행 설치하여야 할 것임.

○ 노계처리시설의 부족(현재까지 노계만 전문처리하는 도계장은 한 곳도 없음)으로 적기에 노계 도태를 할 수 없어 도태기간이 경과한 노계에서 생산되는 계란이 생산과잉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금

년과 같은 불황시에도 자율생산 조절을 위하여 노계 도태 시기를 단축하여 도태 또는 생산성이 낮은 계군을 도태코자 해도 노계처리시설의 부족으로 시행을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장기간의 불황만 초하고 있는 실정임.

○ 전기 각호의 상황을 고찰해 보면 채란계 및 종계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키 위하여는 노계처리 전문 도계장의 설치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

건의

다음과 같이 노계 처리 전문 도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기 바람.

○ 지역별 설치수량: 1일 처리능력 3~5만수 규모 5개소

전국을 3개권으로 구분하여 경기, 강원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 3개소, 영남권 1개소, 호남권 1개소

○ 설치시기

2000년까지 10년간 (가능한 때 2년 1개소씩 연차적 실시)

○ 소요자금

개소당 40~50억원, 총 150~250억원

○ 소요자금

소요금액의 70% 융자(개소당 약 30억원)

○ 사업주체

개인(법인) 사업으로 설치, 운영토록 조치(유도)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희망자)가 없을 시는 지역별로 생산자가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하여 설치, 운영토록 하고 이도 불가능할 시는 축협중앙회로 하여금 설치 운영토록 조치.

○ 운영방법

• 노계(산란 및 종계)만 전문적으로 도계하여 발골처리하고 일반 육계는 일체 취급치 않음.

• 생산자와 연중 계약에 의거 도계물량을 확보 운영토록 함.

• 자체 도계물량(정육으로 환산분)의 1개월분 이상을 비축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여 자율생산 조절 및 육가공 원료육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함.

(자율생산 조절 및 수급상 필요시 정부의 노계 수매비축 지시에 의한 의무적인 수매비축 이행)

• 노계가격 및 가공원료육 납품가격 등 중요사항은 향후 구성될 노계수급조절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토록 함.

* 구성 ; -생산자대표 약간명

- 노계전문 도계장 약간명
- 대한양계협회
- 대한가금처리협회
- 한국부화협회
- 한국육가공협회

* 주관 ; 대한양계협회

○ 행정사항

• 정부에서는 노계전문 도계장을 설치코자 하는 자에 대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도계장 설치 허가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제반조치 강구
-도계장 허가 억제를 위한 지침과 행정지시사항 완화 또는 해제

-노계전문 도계장 설치허가신청이 있을 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허가여건이 갖추어졌다고 인정될 때는 즉각 허가조치토록 허가청(시, 도지사)에 시달

-도계장 설치허가시는 허가조건으로 노계처리전문 도계장으로 하고 발골, 비축시설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정부의 수급조절(의무수매비축) 지시를 철저히 이행토록 함

• 대한양계협회에서는 노계전문 도계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적격자를 물색하여 노계전문 도계장을 설치 운영토록 유도함과 동시에 지역별로 생산자들이 출자하여 법인격의 회사를 설립하여 노계전문 도계장을 설치토록 추진

• 정부에서는 노계전문 도계장의 설치대상자가 없을 때(생산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지역)는 축협중앙회로 하여금 본 사업에 참여토록 조치

기대효과

○ 양계산업의 안정화 기여

- 노계의 적기도태를 통한 자율생산 조절로 생

산과잉 억제

- 노계가격의 적정선 유지로 생산농가 소득증대
- 육가공 원료육(노계육)의 안정적 공급으로 닭고기(칠면조육 등의 대체원료육 포함) 수입억제
- 노계처리산업의 전문화로 부가가치 제고
- 도계작업 능률향상
- 상품성 향상
- 전 (1)~(2)의 사항에 의거 처리비용 절감과 원가상승 억제효과로 지속적인 적정이윤 추구
- 노계육을 이용한 육가공산업 발전 기여
- 적정가격에 의한 원료육 확보 용이
- (노계전문 도계장과 연중 공급계약에 의거 지속적인 확보 가능)
- 원료육 확보곤란, 가격의 불안정(상승)을 이유로 한 원료육(칠면조육 등 대체육 포함)수입명분 균절

종계분과위원회 개최

자율적으로 생산조절키로

7월 종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재식)가 지난 10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육계와 계란이 가격하락으로 부화업계에 불황이 미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불황타개를 위해 생산조절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종계부화업계도 인위적인 생산조절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자율적인 생산감축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종계는 물론 채란계도 생산조절을 위해 노계도태를 서두르고 있으나 노계가 도태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노계도계가 육계전용 도계장에서 육계를 도계한 이후에 부수적으로 노계를 도계하고 있으며, 또 폐수처리 문제 등으로 노계도계를 기피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노계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도계장 설립이 절실하여 노계전문 도계장이 출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가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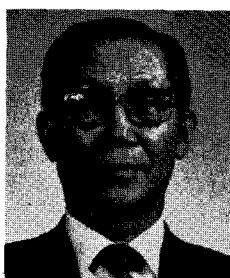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외국인력 수입 검토

7월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최준구)가 지난 12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최근 계분처리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정부는 법을 개정하여 단속을 강화하려 하고 있어 채란업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더구나 계분을 처리, 비료자원으로 이용하려 해도 비료관리법의 모순으로 효과적인 계분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수입개방과 더불어 정부의 모순된 정책, 법조항 등이 양계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성토하였다.

한편 양계장의 인력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양계장 운영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외국에서 인력을 수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또 값싼 인력을 이용할 수 있어 원가절감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으로 인력수입방안을 계속 연구하기로 하였다.

오봉국 박사 학술원상 수상자로 선정



△오봉국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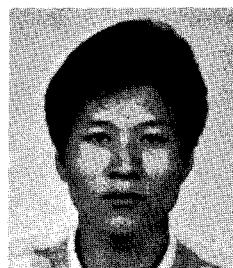
본회 고문 겸 한국양계박람회 추진위원장인 오봉국 박사가 축산분야에서는 최초로 제36회 대한민국 학술원상을 수상자로 결정되었다.

학술원상 수상의 영광을 차지한 오봉국 박사는 1952년부터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서 축산업을 주도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배출하는 한편 어려운 연구여건하에서도 연구사업에 전념하여 커다란 성과를 거둔 것이 높이 평가를 받게 되었다. 기축유전에 대한 기초분야 논문 18편, 가금육종 60편, 한우 육종 12편, 유우육종 11편 및 기타 육종관련분야 6편 등을 연구발표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닭의 세포유전학적 연구를 수행하여 염색체의 분염분석법의 개선과 핵형분석을 통한 표식인자의 구명에 기초를 닦아 놓았으며, 염색체의 배수성 연구에도 효시적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란계와 육용계의 효율적 육종방법을 제시하였다.

학술원은 1954년 창립된 과학자의 최고대표기관으로서 학술발전에 커다란 업적을 쌓은 과학자에게 수상하는 영예롭고 권위있는 상으로 인정되고 있다.

신입 직원 채용



△김동진

본회는 편집부 이용호씨가 의원면직됨에 따라 입직원 김동진(충남대학교 농과대학 축산학과 졸업예정)씨를 8월1일부로 채용하였다.

본회, 일본양계산업 시찰단 파견



수입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시설자동화 및 계분처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산물출하 관리상태 등을 둘러보기 위해 지난 7월8일, 15일 종계·육계부문, 채란계부문으로 나눠 일본에 시찰단을 파견하였다.

이번 시찰단은 동경, 사이다마현, 군마현에 있는 종계장, 도계장, 닭고기가공공장, 육계농장, 채란자동화시설농장, 계분처리농장, 생활협동조합 등을 시찰하였다.

시찰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종계·육계부문

지덕호(이천축산), 노비봉(이천축산), 이해용(하양부화장), 박찬용(선진사료), 남광풍(풍전부화장), 박영재(이천축산), 노광영(학상협업)

• 채란계부문

최준구(본회부회장, 삼우농장), 전현수(양계협회), 최우영(삼우농장), 하태욱(미원사료), 임영식(에덴농장), 손창현(옥포양계), 유기종(선진사료), 이기동(전북양계조합), 박옥룡(전북양계조합), 권호(전북양계조합), 박동원(선린농장), 박주환(합동농장), 윤재섭(시목양계)



「월간 양계지」는 본회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며 각종 정보를 전달하여 양계의
선진화를 추구하기 위해 발행되고 있습니다.
매월 월간 양계지를 읽는 생활을 습관화 합시다.